

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우리 구 성수동2가 265-4번지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30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소규모재건축사업
- 명 칭 :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65-4
- 면 적 : 3,866㎡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명 칭 :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3길 6, 4동 205호

4. 조합설립인가일: 2020. 7. 7.

5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: 2026. 4. 30.

6. 취소사유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함.